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22-67관련
----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2. 9. .

발 의 자 : 신종갑

1. 수정이유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의 부칙과 맞춰 변경

2. 수정 주요내용

부칙 중 “공포한 날”을 “2022년 10월 7일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안 부칙 중 “공포한 날”을 “2022년 10월 7일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부칙 <조례 제1415호, 2021.9.30.></p> <p>제2조(한시정원) 일반직 정원 중 본청 소속 5급 1명과 6급 이하 2명의 한시정원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 ----- ----- ----- 제3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----- -----.</p> <p>부칙 <조례 제1415호, 2021.9.30.></p> <p>제2조(한시정원) 일반직 정원 중 본청 소속 5급 1명과 6급 이하 2명의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마포1번가연구단의 존속기한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</u></p> <p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부칙 <조례 제1415호, 2021.9.30.></p> <p>제2조(한시정원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</u></p> <p><u>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